

「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5조~제6조)
-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(안 제7조~제8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호
 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, 제3조제4호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문제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작물의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과 농업의 작물 전환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할 수 있게 하였음.
- 안 제6조에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관련부서에서는 농업인 등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충실히 하고,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·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